

2021년 해양수산R&D 및 해양경찰청R&D 지원방안 안내(2차)

-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제정 및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 대응 -

<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총괄실, 2021. 2. 22.>

□ 추진배경

-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연구공백과 연구개발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위기 이후의 혁신역량을 확충할 필요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'혁신법') 시행(2021. 1. 1.)으로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됨에 따라 연구개발 연속성 확보 필요

□ 지원개요

- (대상) 해양수산부·해양경찰청 R&D과제* 중 2020년 이후 진행 중인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
 - * 전문기관(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) 관리 과제에 한하여 적용
- (1차안내) 지원방안 ①, ②, ③, ④
- (2차안내) 지원방안 ⑤

□ 지원방식

- 전문기관은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체결

□ 지원방안

- ①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의 평가결과 통보 이후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비 사용 허용
 - 연구개발기관 자체재원을 활용한 연구개발비 선집행 허용
 - *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71조
 - 연구개발기관(비영리기관 한정) 자체재원을 활용한 연구개발비 선집행 시 개인카드 사용 허용
 - *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22조 및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2조제5호

②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 일부 허용

- *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65조 제4항, 제5항
- 혁신법 상 현금 인건비 허용 범위
 -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(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)
 - *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65조
-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른 인건비 현금 허용 범위
 -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기존채용 참여연구자
 - * 2021년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고, 추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연장 검토
- 혁신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 -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참여연구자
 -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참여연구자
 -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의무채용 및 추가채용 참여연구자

③ 감염병 예방/대처 관련 비용 정산 시 인정

- 과제 수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비용,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집행하였으나 감염병 발생에 따라 실제 과제 수행에 사용하지 못한 비용 등 정산 시 폭넓게 인정
 - * 2021년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고, 추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연장 검토

④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완화

-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확대: 75%→80%
- 중소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완화: 13%→10%
- * 2021년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고, 추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연장 검토

<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>

연구개발기관	일반적 적용	비상 매뉴얼 적용
• 중소기업인 경우	75% 이하	80%
• 중견기업인 경우	70% 이하	좌동
• 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	50% 이하	좌동

<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>

연구개발기관	일반적 적용	비상 매뉴얼 적용
• 중소기업인 경우	10% 이상	좌동
• 중견기업인 경우	13% 이상	10% 이상
• 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	15% 이상	좌동
현금 부담 납부기간	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	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전까지 허용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(또는 전문기관의 장)이 인정할 경우 허용되는 연구비 계상·사용 기준 제시

- (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계상 한도 제한적 초과 허용) 영리기관은 현금 인건비 계상 시 연구개발비의 50% 범위 내에서만 계상 가능하지만 아래의 경우 50% 초과 계상 가능(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5항)

-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참여연구자
-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참여연구자

<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>

제65조(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)

⑤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.

- (외부전문기술활용비 사용 한도 제한적 초과 허용) 외부전문 기술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의 40%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지만, 국외기관에 연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, 외부 전문기술활용비를 직접비의 40%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(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2항)

* 외부전문기술활용비: 기술도입비, 전문가 활용비(원고료, 강사료,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),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포함

<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>

제25조(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)

...

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기술도입비: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
2. 전문가활용비: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
 - 가.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: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
 - 나.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: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
3.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: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

...